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
2021년 제1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월 5월 04일

2021년도 제1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

「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」은 국내 기업,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
우수 물류신기술·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
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보급·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

1. 신청자격

-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
2. 신청 대상 기술

-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·개량된 기술
- 신규성·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
-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

3. 신청분야

-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분야

분야	설 명
운송	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·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보관	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·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하역	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·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포장	물자의 효율적 운송·보관·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·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

분야	설 명
정보화	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
표준화	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
보안 / 안전	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, 안전 제반기술
기타	기타 물류 기술

4. 추진절차

-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·평가에 대한 사항은 「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0호)」 및 「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2020. 5. 21)」 을 적용함
- (시행계획 공고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
- (접수 및 보완)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
- (이해관계인 의견수렴)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
- (1차 심사) 신규성·진보성 및 안전성·경제성 평가
- (2차 심사) 현장적용성 및 보급·활용성 평가
- (신기술 지정)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

【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추진일정(안)】

공고/접수	보완	이해관계인 의견수렴	1차 심사	2차 심사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기술심사위원회	현장심사위원회
'21.05.04. ~ '21.06.03.	~'21.06.23	'21.06.30. ~ '21.07.29.	'21.08.16 ~ '21.08.20	'21.09.27. ~ '21.9.30.

* 해당일정은 신청인의 접수 및 보완,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평가기준

- (1차 심사) 신청·접수 완료된 기술에 대해 신규성, 진보성, 안전성, 경제성 등을 심사

구분	지정 심사기준
1차 심사 (기술심사)	1. 신규성(30점) :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·개량한 기술(개발·개량정도(20점), 차별성 및 혁신성(10점)) 2. 진보성(30점) :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·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,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(성능·품질향상(10점), 시공기간 단축(10점), 첨단 기술성(10점)) 3. 안전성(20점) :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, 생명, 재산 등을 사고,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,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(기술공학적인 안전성(10점),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(10점)) 4. 경제성(20점) :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·시공,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(설계·시공비 절감(10점), 유지관리비 절감(10점))

- (2차 심사)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성 등을 심사

구분	지정 심사기준
2차 심사 (현장심사)	1. 현장적용성(70점) : 시공성, 안전성·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(시공성(30점), 안전성(10점), 유지관리성(30점)) 2. 보급·활용성(30점) : 공익성/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(보급성(15점), 활용성(15점))

6. 공고 및 접수

- (공고기간) 2021. 05. 04.(화) ~ 06. 03.(목)
- (접수기간) 2021. 05. 31.(월) ~ 06. 03.(목), 18:00까지
- (접수방법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방문 접수
 -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

○ (제출서류)

구분	No	제출서류	비고
필수 제출 서류	①	신청공문	신청기관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되 공동신청인 경우 대표기관에서 작성
	②	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	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(1만원권)를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
	③	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부록	특허등록증, 시험성적서 등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첨부
	④	원가계산서	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	⑤	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	
	⑥	활용실적 서약서 등	
선택 제출 서류	⑦	법인 관련 증빙 자료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법인등기부등본 - 법인인감증명서 -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시)	신청인이 법인인 경우
	⑧	개인 관련 증빙 자료 - 신분증 사본 - 주민등록 초본 - 개인인감증명서 원본	신청인이 개인인 경우
	⑨	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관련 문서 사본	신청인이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에 따라 참여제한 중이거나, 동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 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경우

* 작성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 사업공고(공지사항) 등의 우수 물류신기술 등 매뉴얼 참조

7. 심사 수수료

-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(수입인지금액 1만원)를 납부
- 심사비용*은 각 심사 단계 전 신청인이 진흥원에 가상계좌 발급을
요청하여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

*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(현장심사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시 신청인 부담)

8. 문의처

○ 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)

- 031)389-6483, hykim@kaia.re.kr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 사업공고(공지사항) 등을 참조